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 (제5조제3항 관련)

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뜨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구명줄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비고>

가. 지역 특성,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